개인 책임과 영업행위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개인 책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지침

2020년 9월 10일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개인 책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Conduct)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금융기관이 달성해야 할 다섯 가지 성과를 제시합니다. 첫째, 기관의 핵심 기능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진(senior manager)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들은 적격하고 적정(fit and proper)해야 하며, 소속 직원의 행위와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업무 수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지배구조 체계가 명확하고 투명한 경영 구조로 이들의 역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넷째, 중대 위험 담당자(material risk personnel)는 적격하고 적정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위험 지배구조, 인센티브 구조 및 행위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모든 직원 사이에서 바람직한 행위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1]

지침은 발표 1년 후인 2021년 9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면제 재무자문업자와 일부 외국 시장운영자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MAS의 규제를 받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기관도 다섯 가지 성과를 달성해야 하지만, 보다 상세한 지침까지 채택할 것으로 통상 기대되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는 않습니다.[2] 중대 위험 담당자란 그 결정이나 활동이 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객의 상당 부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프라이빗 뱅크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임 고객관리 담당자(relationship manager), 데스크 책임자, 컴플라이언스 및 위험관리 책임자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지침은 감독상 기대의 형태를 취합니다. 지침은 감독 관계, 적격성 및 적정성 기준, 그리고 개인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MAS의 권한에 의존합니다. 실무에서 기관들은 각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도식화하고 문서화하여 검사 때 MAS에 제시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책임 도식이 증거로 쓰입니다.

FSMA에 따른 금지명령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FSMA) Part 3의 통일된 금지명령 제도는 이 지침에 집행력을 부여합니다. Section 7에 따라 MAS는 적격하고 적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해당 인물이 영구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 대상 업무를 영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능에는 자금 또는 자산 취급, 위험 인수, 위험관리 및 통제, 핵심 시스템 관리가 포함됩니다. 명령은 또한 어떤 사람이 기관을 경영하거나, 이사로 활동하거나,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3]

이 제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전 제도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부문에 걸쳐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금융업계와 과거, 현재 또는 장래의 연관성이 있는 해외 인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31일 이전의 불법 행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MAS는 귀책 정도, 피해, 선례 및 공익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기간을 정하며, 따라서 고위직에 있었다는 사실이 귀책 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불복할 수 있습니다.[4] FAA, 보험업법(Insurance Act) 및 SFA의 종전 규정에 따라 내려진 명령은 만료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제재 수단

MAS의 제재 지침서(enforcement monograph)는 MAS가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합니다. 형사 소추 회부, 민사제재금 조치, 라이선스 또는 규제상 지위의 철회나 정지, 해임, 금지명령, 통고처분(composition), 견책, 경고 또는 권고 서한입니다. 검찰총장(Public Prosecutor)인 법무장관(Attorney-General)에게 속하는 소추를 제외하면, MAS는 이 모든 조치를 자신의 이름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실질적으로 금전적 제재로서,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추 대신 제안됩니다. 제안이 거부되면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SFA Section 334에 따라, MAS는 어떤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공익상 견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견책할 수 있습니다.[5]

통계는 이러한 수단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MAS는 형사 유죄판결 19건, 금전적 제재금 및 통고처분 2,900만 달러, 민사제재금 30만 7,000달러, 금지명령 23건, 라이선스 취소 3건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견책 43건, 경고 150건, 권고 서한 38건, 감독상 주의 환기 352건을 기록했습니다.[6] 이러한 분포는 전형적입니다. 공식 제재는 비교적 적고, 대부분의 감독상 시정은 공개되지 않는 주의 환기, 경고 및 서한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의 책임: 2025년 7월의 조치

2025년 7월 4일의 조치는 책임 체계가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MAS는 9개 기관에 2,745만 달러의 통고처분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비교적 소규모인 한 회사의 개인 4명에게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MAS는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와 최고운영책임자가 고위 경영진으로서 자금세탁방지 통제가 사업 성장에 발맞추도록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신탁회사의 고위 경영진 3명과 한 은행의 전직 팀장 2명은 공개 견책을 받았습니다. 고객관리 담당자 및 감독자 9명은 비공개 견책을 받았습니다.[7]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E편 제VI장에서 다룹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고위 경영진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MAS는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한 고객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통제 환경을 책임지는 임원들을 특정하여 이들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개인 책임의 핵심 개념입니다. 경영자는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시스템이 사업에 뒤처지도록 방치되었다면 그 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주

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Guidelines on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Conduct*(mas.gov.sg, 2020년 9월 10일 발표), Outcomes 1–5. ↩
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Guidelines on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Conduct*, 2020년 9월 10일: 시행일 2021년 9월 10일, "Applicability of the Guidelines"(10개의 열거된 예외를 제외한 MAS 규제 대상 모든 금융기관), "with fewer than 50 headcount" 금융기관에 관한 문단, Outcome 4의 중대 위험 담당자 정의. ↩
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AQs on Issuance of a Prohibition Order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FSMA ss. 6 및 7(1)–(2), 시행일 2024년 7월 31일 및 그 이전 불법행위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
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AQs on Issuance of a Prohibition Order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해외 인물, 기간, 직위 및 FSMA ss. 13–14에 따른 불복에 관하여. ↩
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Enforcement Monograph*, 2025년 7월, paras 3.5 및 6.1–6.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Enforcement Monograph*, 2025년 7월, paras 6.17–6.18. ↩
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Enforcement"(mas.gov.sg/regulation/enforcement,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6년 10월 7일 발표된 *Enforcement Report 2025/2026*의 주요 수치(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0일까지). 형사 유죄판결, 경고 및 권고 서한에는 MAS–CAD 공동 수사 체계에 따른 사건이 포함됨. ↩

7.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Takes Regulatory Actions against 9 Financial Institutions for AML-Related Breaches”, 2025년 7월 4일: 회사의 성장에 맞추어 “failed as senior managers to ensure that the AML/CFT policies and controls … kept pace” Blue Ocean Invest의 최고경영자와 최고운영책임자에 대한 6년 및 5년의 금지명령, 고객관리 담당자 2명에 대한 3년의 금지명령.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Takes Regulatory Actions against 9 Financial Institutions for AML-Related Breaches”, 2025년 7월 4일, Trident Trust Company (Singapore) 고위 경영진과 UOB 전직 팀장에 대한 견책 및 고객관리 담당자·감독자 9명에 대한 비공개 견책에 관하여.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